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가. 예산(안) 편성중점방향

-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조정
-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편성
-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편성

<세입예산>

-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
- 중앙지원금
- 지방교부세, 수해복구사업, 일반보조사업, 중앙지원기금 등 국고보조금 계상

<세출예산>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 인건비와 기준경비,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 수해관련 복구사업비 계상
- 정부지원사업비 조정 반영
- 기타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세출소요 반영

나.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1,042,514,601	100	919,750,594	100	122,764,007	13.3
○ 일반회계	769,175,543	73.8	691,209,955	75.2	77,965,588	11.3
○ 특별회계	273,339,058	26.2	228,540,639	24.8	44,798,419	19.6
-공기업특별회계	221,549,312	21.2	178,453,855	19.4	43,095,457	24.1
·공영개발	52,091,889	5.0	52,091,889	5.7	-	-
·지역개발기금	169,457,423	16.2	126,361,966	13.7	43,095,457	34.1
-기타특별회계	51,789,746	5.0	50,086,784	5.4	1,702,962	3.4
·도립우천전문대학 운영	2,679,511	0.3	2,679,511	0.3	-	-
·의료보호기금	36,903,065	3.5	35,200,103	3.8	1,702,962	4.8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033,625	0.8	8,033,625	0.9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150,232	0.2	2,150,232	0.2	-	-
·증평출장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023,313	0.2	2,023,313	0.2	-	-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42,514,601	100	919,750,594	100	122,764,007	13.3
지방세수입	147,521,000	14.2	135,421,000	14.7	12,100,000	8.9
세 외 수 입	286,374,447	27.5	245,123,586	26.6	41,250,861	16.8
-경상적세외수입	55,065,055	5.3	54,129,940	5.9	935,115	1.7
-임시적세외수입	231,309,392	22.2	190,993,646	20.7	40,315,746	21.1
지방교부세	145,324,906	13.9	132,262,740	14.4	13,062,166	9.9
지방양여금	72,326,940	6.9	72,326,940	7.9	-	-
보 조 금	336,407,308	32.3	287,056,328	31.2	49,350,980	17.2
지 방 채	54,560,000	5.2	47,560,000	5.2	7,000,000	14.7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42,514,601	100	919,750,594	100	122,764,007	13.3
인 건 비	54,787,198	5.2	55,930,393	6.1	△1,143,195	△2.0
물 건 비	44,226,281	4.2	40,355,954	4.4	3,870,327	9.6
이 전 경 비	272,854,112	26.2	251,665,202	27.3	21,188,910	8.4
자 본 지 출	396,212,638	38.0	336,782,428	36.6	59,430,210	17.6
용자 및 출자	82,988,212	8.0	82,988,212	9.0	-	-
보 전 재 원	57,906,723	5.6	57,906,723	6.3	-	-
내 부 거 래	25,706,155	2.5	24,565,230	2.7	1,140,925	4.6
예비비및기타	107,833,282	10.3	69,556,452	7.6	38,276,830	55.0

2. 예산(안) 내역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25억 1,460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3.8%로 7,691억 7,554만 3천원, 특별회계가 26.2%인 2,733억 3,905만 8천원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1,475억 2,100만원,

세외수입이 833억 6,050만 7천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5,207억 3,403만 6천원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 보통세는 77억원이 증액된 1,325억 1,300만원,
- 목적세는 3억원이 증액된 84억 2,300만원,
- 과년도 수입은 41억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임.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3,511만 5천원이 증액된 43억 3,920만 5천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용자금 원금 수입은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억 300만원,
- 부담금 수입은 21억 3,661억 9천원이 증액된 121억 6,051만 8천원
- 잡수입은 4억 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625만원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8%인 130억 6,216만 6천원이 증액된 1,453억 2,490만 6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54억 5,000만원
- 증액교부금 76억 1,216만 6천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8%인 478억 7,768만 8천원이 증액된 3,030억 8,219만원으로 이는

- 행정자치부 97억 3,300만원
- 문화관광부 5억 8,270만 2천원
- 농림부 20억 8,420만 7천원
- 산업자원부 10억원
- 보건복지부 28억 6,067만 7천원
- 환경부 24억원
- 건설교통부 200억 2,757만 2천원
- 농촌진흥청 2억 7,664만원
- 산림청 2억 1,000만원
- 문화재청 8,560만원
- 수해복구사업 74억 7,879만원

-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7.7%인 11억 3,850만원이 증액된 26억 332만 8천원임.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733억 3,905만 8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215억 4,931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517억 8,974만 6천원임.

공기업특별회계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3억 9,545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바,

- 융자금 이자수입 △26억 3,520만원
- 융자금 회수수입 137억원
- 지방채 매출수입 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7억 296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바,

- 내부전입금 1억 8,416만 1천원
- 반환금수입 4,550만 9천원
- 국고보조금 14억 7,329만 2천원임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510만 7천원이 감액된 533억 8,092만 3천원임.
-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4,089만 7천원이 증액된 425억 9,759만 7천원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2,495만 7천원이 증액된 2,340억 2,679만 1천원임.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94억 3,021만원이 증액된 3,920억 814만 3천원으로 각 지역 현안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도로개설사업비등이 증액된데서 기인한 것임.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092만 5천원이 증액된 257억 615만 5천원으로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48억 1,629만 4천원이 감액된 32억 6,284만 3천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 | | |
|------------|-----------------|
| -일반행정비 | 30억 4,493만 2천원 |
| -사회개발비 | 251억 383만 5천원 |
| -경제개발비 | 482억 9,310만 1천원 |
| -민방위비 | 4억 239만 3천원 |
| -지원 및 기타경비 | 11억 2,132만 7천원 |

이며,

○ 주요경비별로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87억원으로

- 인건비와 기준경비 16억원
- 징수교부금 60억원
- 교육재정교부금 9억원
-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이며,

둘째, 수해복구사업비로 195억원

셋째, 비도지정과 특정재원 관련사업비는 470억원으로

- 국고보조사업 393억원
- 지방교부세사업 66억원
- 중앙기금사업 11억원

넷째, 자체사업비로는 78억원으로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 투자사업비 66억원이며,

다섯째, 경쟁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예비비 48억원등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복리후생비 2,978만 1천 원
- 포상금 △1,786만 9천 원
- 예비비 △1,191만 2천 원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30억 9,545만 7천 원으로

- 자본예산 예비비 430억 9,545만 7천 원

이고

다음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7억 296만 2천 원으로

-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 16억 5,754만 3천 원
- 자체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0만원
- 예비비 2,900만 9천 원임.

3. 검토의견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691억 7,554만 3천원, 특별회계 2,733억 3,9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9,197억 5,059만 4천원보다 13.3%인 1,227억 6,400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실업대책 예산,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24억 8,500만원보다 165%인 41억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으로 이는 1997년도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78억 6,700만원보다 53%인 41억 6,700만원이 감액된 37억원, 1998년도 2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42억 1,800만원보다 26%인 10억 8,600만원이 감액된 3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이번 과년도 수입 세입증대는 관련부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비해 165%라는 실적을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중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사업비 추가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복지 대책 등의 경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액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감액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PAGE	사 업 명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요 구 액
36	· 공무국의여비	150(△50)	170(△30)	200
37	·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70(△30)	-	79
42	· 위원회 참석수당	45(△15)	-	55
44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0(△500)	3,300(△100)	4,000
57	· 소정주요시책추진수용비	10(△5)	-	12
135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지원	-	0(△500)	300
135	· 민간인해외세일즈참가여비	-	0(△30)	12
170	·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	0(△200)	300

둘째,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 지출은 수해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정 예비비 예산 78억 9,421만 2천원의 61.2%인 48억 3,265만 1천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예비비 지출잔액이 30억 6,15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7,691억 3천원의 0.4%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향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